
'22~'24년 중기인력운영계획(안) 수립기준

2022. 1.

|| 순 서 ||

I . 수립근거	1
II . 기본방향	2
III . 세부 수립기준	3
IV . 향후 추진일정	4
V . 행정사항	4
※ 【별표】 중기인력운영계획(안) 수립단위	5

I

수립근거

-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20. 6. 5.)
 -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하여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
 -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
 - 전년도말 기준 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1%)에 대해 재배치계획 수립
- *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
- 유의사항: 중기인력운영계획 상 감축, 재배치되는 사업·지원별 부문을 '22년 수시, '23년 정기증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움
- * 예시: 중기인력운영계획 상 OO부문 재배치 기재, 수시증원에서 OO인력 증원요구
- 중기인력운영계획 상 증원소요와 수시·정기 증원요구는 일치하여야 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조(증원의 절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중장기 경영 목표, 업무소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기본방향

- 과거 실적의 철저한 분석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예측을 통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력 제고
- 중장기('22~'26년) 경영전략 및 사업운영계획을 반영한 『중기인력운영 계획 수립('22~'24년)』으로 전사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 견인
 - 경영비전 실현계획과의 연계,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단의 대응력 강화를 고려하여 공단 사업 및 소요인력 전망

< 중기인력운영계획 주요 내용 >

- ①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최근 3년간 인력운영 추이, 인력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업무 관련 경영효율화 추진내역 등 포함
- ② (중기 인력운영 기본방향) 경영환경 분석 및 중기 경영목표를 토대로 중기 방향 수립
- ③ (중기인력운영계획) 기관의 인력배치 전략, 향후 사업량·사업비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 전망 등을 기술하고, 사업단위별 인력운영 계획을 제시
 - *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방안, 향후 신규채용 계획, 사회형평적 채용계획 등 포함

- 국정과제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응한 『재배치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도출을 통해 정부정책과의 방향성 일치
 -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 기능 간, 본사-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를 발굴하고, 재배치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제시
- 경영평가를 통한 재배치계획 실적 점검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직제 등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부서 내 이동은 인력 재배치에 불 포함되어, 실현가능한 재배치계획 수립을 통한 인력 재배치 필요

Ⅲ

세부 수립기준

1. 수립 개요

- 계획기간: '22. 1. 1. ~ '24. 12. 31.(3년)
- 수립단위: 주요사업·경영관리 부문별 조직체계를 반영한 사업단위 편성
 - 주요사업 부문: 직제분류 6개, 사업별 15개
 - 경영관리 부문: 직제분류 7개, 지원별 18개
- ※ 계획 수립단위 및 수립부서는 [별표]를 참조하되,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수립

2. 작성 요령

- [붙임2] 작성양식 참조

3. 수립·작성시 유의사항

- 중장기('22~'26년) 경영전략 및 사업운영계획과 방향성이 일치되게 작성하고, 추진사항 및 목표치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정부정책(국정과제), 경영비전을 반영하여 사업단위별 인력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재배치계획 세부추진과제와 연계 철저
- 국정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필히 반영
- 자체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한 이사장 당부사항 세부추진과제 반영

IV

향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정	비고
○ 본부·실·국·단별 중기인력운영계획(안) 작성 및 제출	~ '22. 2. 9.(수)	본부·실·국·단
※ 사전설명회의: '22. 1. 19.(수) 오후 2시, 조직예산부 내 회의실(실·국·단 주무팀장 참석)		
○ 중기인력운영계획(안) 취합 및 조정	'22. 2. 중	기획조정본부
○ 중기인력운영계획(안) 수립 및 기획재정부 제출	'22. 2. 말	
○ '22년 수시 인력증원 고용노동부 협의	'22. 2. 말	
○ '22년 수시 인력증원 기획재정부 협의	'22. 3. 중	
○ '23년 정기 인력증원 고용노동부 협의	'22. 5. 중	
○ '23년 정기 인력증원 기획재정부 협의	'22. 6.~7. 중	
○ '22년 수시 증원인력 직제규정 반영	'22. 7.	
○ '23년 정기 증원인력 직제규정 반영	'23. 1.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행정사항

○ 각 본부(실·국·단)장은 상기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22~'24년) 중기인력 운영계획(안)』을 '22. 2. 9.(수)까지 제출(주무부서 취합)

- [별표] 중기인력운영계획(안) 수립단위를 참고하여 [붙임 2]의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

※ 단, 경영지원국은 인재개발원, 산재보상국은 직업환경연구원, 의료사업본부는 재활공학연구소의 중기인력운영계획(안)을 취합·조정하여 제출

【별표】 중기인력운영계획(안) 수립단위

구분	직제별분류	사업·지원별분류	주관부서	관련 부서/소속기관/임시조직
주요 사업 부문	I. 산재보상	1. 보상계획	보상계획부	업무상질병부 보험급여관리부 직업환경연구원
		2. 업무상질병		
		3. 보험급여관리		
		4. 구상금협의조정	구상관리부	
	II. 재활	1. 재활	재활계획부	산재요양부 직업복귀지원부 지능형재활시스템고도화TF팀 재활중기계획TF팀
	III. 보험적용	1. 보험가입	적용계획부 자격관리부	보험가입부 납부지원부 가입판단부 부과운영부 소득정보부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2. 자격관리		
		3. 보험부과·징수		
	IV. 산재의료	1. 산재의료	의료계획부	병원운영부 진료지원부 울산병원건립추진단 재활공학연구소
	V. 복지/연금	1. 근로복지	복지계획부	퇴직연금계획부 퇴직연금운영부 일가정양립지원부 임금채권부
		2. 직장어린이집	일가정양립지원부	직장보육지원시스템구축TF팀
		3. 퇴직연금	퇴직연금계획부	퇴직연금운영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TF팀
		4. 임금채권보장	임금채권부	
	VI. 일자리안정	1. 일자리 안정 계획	일자리안정계획부	
		2. 일자리 안정 심사	일자리안정심사부	
경영 관리 부문	I. 기획조정	1. 경영기획/비전전략	전략기획부	
		2. 조직/예산	조직예산부	
		3. 성과관리	성과평가부	
		4. 법무지원	법무지원부	
		5. 국제협력	근로복지연구원	
		6. 근로복지연구	근로복지연구원	
	II. 정보화지원	1. 정보화지원	정보화본부	공공클라우드센터지정·구축TF팀 전국고용노동조합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III. 사회적가치	1. 가치혁신	가치혁신부	윤리경영혁신추진단
		2. 고객지원	고객지원부	스마트웰컴TF팀
		3. 국민소통	국민소통부	
	IV. 경영지원	1. 행정지원	운영지원부	
		2. 인사관리/인재양성	인사기획부	인사운영부 인재개발원
		3.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노사협력부	임금체계개편TF팀
		4. 노사관계	노사협력부	
	V. 안전환경	1. 재난안전/안전점검/비상대비	안전환경부	
		2. 시설·환경관리/에너지절약		
	VI. 산재심사	1. 산재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VII. 감사	1. 감사	감사부	청렴부